

짜인다고 못해요? 그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. 왜 그러냐 하면 작전이 있어야 되거든.

그래서 앞으로는 文一權 議長님이나 運營委員長님이 이런 議員 전체, 특히 地方議會에서는 서울시議會를 쳐다보고 있습니다. 이런 問題는 좀더 폭넓게 意見을 수렴을 하시고 작전회의를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실익이라고 그러면 語弊가 있지만, 會議議員의 명분에 맞는, 우리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意見을 집약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

그래 저는 오늘 이 13회 定期會에서 첫째 議案인가, 會期 선택을 할 때 그때 市長, 教育監 있는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. 그러나 議會의 체면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순간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, 제 얘기는 13회 定期會부터 議政 보이콧 하자. 이것입니다, 議政 보이콧. 12月末까지 定期國會가 아직 있어요, 國會 內務委員會가 열리고 있다고. 좀더 조직적으로 國會에 가서 우리가 압박을 가하는 그와 같은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, 이 한달 동안. 本議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發言을 마쳤습니다.

감사합니다.
○議長 文一權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은 우리 서울시議員 전부의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. 그러나 現行法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上位 立法機關에 하시는 말씀으로 간주하겠습니다. 發言하실 議員 또 계십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
안 계시면 討論을 종결하고 表決할 것을 宣布합니다.

그러면 서울特別市會議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 관한條例案에 대하여 贊成하시는 분은…….

(場內 騷亂)
(「반대하는 사람부터 먼저 일어나라고……」하는 議員 있음)

나는 무엇이든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오.

議政活動費支給等에 관한條例案에 대하여 贊成하시는 분은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贊成하시는 분은 서울特別市會議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 관한條例案 通過를 贊成하시는 분입

니다.

(起立 表決)

앉아 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이 條例를 반대하시는 분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起立 表決)

앉아 주시기 바랍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
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在席議員 111名 中 贊成 57名, 反對 10名, 棄權 44名으로 서울特別市會議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 관한條例案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.....
(參 照)

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안
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,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의정활동비) ①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,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

②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③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단,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 3 조(회의수당) ①의원의 회기중 회의(위원회 회의 포함한다)에 출석한 경우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조사·활동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.

②제1항의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.

<p>③회의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제 4 조(여비)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(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)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, 국외여비, 관내출장여비로 구분한다. 제 5 조(여비지급 기준)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별표 3,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. ②관내출장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중 현</p>	<p>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되,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부 칙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5. 7. 8부터 적용한다. ②(다른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5호중 “사회복지위원회”를 “보건사회위원회”로 한다. ③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원보수등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(제2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30%;">구 분</th> <th colspan="2">의 정 활 동 비</th> </tr> <tr> <th style="width: 35%;">의정자료수집·연구비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보 조 활 동 비</th> </tr> <tr> <td>지 급 액</td> <td>월 500,000원</td> <td>월 100,000원</td> </tr> </table>		구 분	의 정 활 동 비		의정자료수집·연구비	보 조 활 동 비	지 급 액	월 500,000원	월 1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의 정 활 동 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의정자료수집·연구비	보 조 활 동 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 급 액	월 500,000원	월 1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 회의수당 지급 기준표(제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구 분</th> <th>지 급 액</th> </tr> <tr> <td>회 의 수 당</td> <td>월 60,000원</td> </tr> </table>		구 분	지 급 액	회 의 수 당	월 6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지 급 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 의 수 당	월 6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3]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(제5조제1항 관련)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철 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선 박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항 공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자 동 차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현 지 교통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숙 박 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식 비</th> </tr> <tr> <th>운 임</th> <th>운 임</th> <th>운 임</th> <th>운 임</th> <th>(1일당)</th> <th>(1야당)</th> <th>(1일당)</th> </tr> <tr> <td>의 장 · 부 의 장</td> <td>1등급</td> <td>2등 정액</td> <td>정 액</td> <td>정 액</td> <td>6,500</td> <td>20,700</td> <td>11,000</td> </tr> <tr> <td>의 원</td> <td>1등급</td> <td>2등 정액</td> <td>정 액</td> <td>정 액</td> <td>6,500</td> <td>20,700</td> <td>11,000</td> </tr> </table>		구 분	철 도	선 박	항 공	자 동 차	현 지 교통비	숙 박 비	식 비	운 임	운 임	운 임	운 임	(1일당)	(1야당)	(1일당)	의 장 · 부 의 장	1등급	2등 정액	정 액	정 액	6,500	20,700	11,000	의 원	1등급	2등 정액	정 액	정 액	6,500	20,700	11,000
구 분	철 도		선 박	항 공	자 동 차	현 지 교통비	숙 박 비	식 비																								
	운 임	운 임	운 임	운 임	(1일당)	(1야당)	(1일당)	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장 · 부 의 장	1등급	2등 정액	정 액	정 액	6,500	20,700	1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원	1등급	2등 정액	정 액	정 액	6,500	20,700	1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
<p>비고 : 1. 서울특별시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 2.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 3.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 4.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등운임을 지급하되,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 5.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개정·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[별표 4]

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5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 임	일 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 비 (1일당)	준 비 금		
								15일 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 이상
의장· 부의장	· 2등급 이상 의 등급구 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	· 2등급 이상 의 등급구 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	1등		가등급30 나등급30 다등급30 라등급30	가등급169 나등급123 다등급 97 라등급 83	가등급133 나등급 99 다등급 72 라등급 61	150	180	210
의 원	· 공무원상의 사 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 는 침대요금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그 실비 액	· 공 무 상 의 사유로 인 하여 침대 요금을 필 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	1등	실비액	가등급25 나등급25 다등급25 라등급25	가등급137 나등급 99 다등급 76 라등급 65	가등급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	140	170	195

비고 : 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국외여비규정 제16조 관련 「별표2」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.
 2. 준비금은 국외여비규정 제22조를 준용한다.
 3.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·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